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5799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이상호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김진규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6. 11.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16. 접수 제257014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나. 피고 B은 주식회사 D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16. 접수 제2570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8. 1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D에 20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22. 3.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D의 대표이사인 E이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9. 12. 27. 인천 서구 F 창고용지 3,907㎡ 및 G 창고용지 3,552.8㎡(이하 '이 사건 인근 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 3. 23. 이 사건 부동산을 각각 매수하고, 2020.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30. 이 사건 인근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2020.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저온물류창고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H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20. 6. 30. 이 사건 인근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H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E은 2021. 4. 29. 배우자 I을 대표자로 하여 피고 B을 설립하였다.

마. 피고 B은 2021. 6. 11.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6. 15. 수탁자인 피고 C, 시공사인 J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인 K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저온물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도 610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2021.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신탁등기가 각각 순차로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D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합계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자 저온물류창고의 부지로 사용될 예정인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설립한 피고 B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2021.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C 명의의 신탁등기가 각각 순차로 마쳐졌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과 수익자 내지 전득자 지위에 있는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 피고 B은 D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14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21. 9. 6. D, E(이하 'D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5333호로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 20억 원 중 D 등이 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18억 원과 2021. 7. 13.부터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D 등은 원고에게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 3. 14. 15억 원, 2022. 3. 17. 3억 원을 지급하는 등 2022. 3. 17.까지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의 원리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5. 25. ‘D 등이 2022. 3. 17.경까지 원고에게 잔존 원금 18억 원 및 그에 대하여 변제기인 2022. 3. 31.까지의 약정이자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6.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당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등은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인근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의 해지 및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신탁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D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D은 이 사건 사업을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역시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D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익금 4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 ③ 달리 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채무초과상태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유일한 책임재산이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거나 적어도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D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이자를 계속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 등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3. 17.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대여약정에서 정한 변제기(2022. 3. 31.)가 다다른 무렵에 변제를 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원고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정석, 판사 강석규, 판사 김소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인천 서구 L 창고용지 5219.3㎡
2. 인천 서구 M 창고용지 5219.6㎡. 끝.

1) 원고가 변론종결후인 2022. 11. 1. 갑 제8, 9호증으로 제출한 서면 참조